

## 오산시 일상감사 규정

제정 2013년 9월 9일 훈령 제23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상감사”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감사부서”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.
3. “집행부서”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시 본청 부서
  - 나.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, 동 주민센터
  - 다. 시 지방공기업
  - 라. 시의 출연기관(단, 50% 미만 출연기관 제외)

**제3조(대상업무 및 기준)** ①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(이하 “일상감사대상업무”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서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.

**제4조(감사 의뢰)** ①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

## 오산시 일상감사 규정

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감사실시 기준)** ①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대상업무를 일상 감사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적법성·타당성을 점검·심사하여야 한다.

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·심사한다.

1. 추진일정의 적정성
2. 소요예산(재원조달)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
3.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
4.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
5.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
6.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
7.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(부서)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

**제6조(감사 방법)**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②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·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·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전기, 통신, 기계, 조경 등 전문분야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공무원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, 일상감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감사결과 처리)**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집행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그 밖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, 조치한 즉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대상업무의 결재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

## 오산시 일상감사 규정

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재검토)**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 
② 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.

- 제9조(감사 효력)**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은 일상감사대상업무의 결재권자의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며, 그 의견의 채택 여부는 결재권자가 결정한다.  
②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·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오산시 일상감사 규정

[별표]

### 일상감사대상업무 및 기준(제3조 관련)

구분	대상 업무 및 기준
1.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	가.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시장 및 결재권자 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나. 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 결정 에 관한 사항
2. 계약업무	가. 추정금액 2억원(단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 의 경우에는 1억원,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「소방 시설공사업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, 그 밖에 공사 관련 법 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) 이상인 공사, 추정금 액 5천만원 이상 용역과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·구매 계약(단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1호, 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함) 나. 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부동산 및 예정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의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
3. 예산관리 업무	가.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(단,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함) 나.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다.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업무	가.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1억원 이상 신규 출연에 관한 사항 나. 그 밖에 시장 및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 하다고 선정한 업무

#### ※ 비고

1. “총사업비”란 공사비, 보상비, 용역비, 시설부대경비(기본조사설계비, 실시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) 등을 말한다.
2. “추정금액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3. “예정가격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일상감사 의뢰서

집행부서	(담당 : )	최종결재자	
건 명		의뢰일자	

1. 요지(사업추진 개요)
  
2. 주요내용 (사업추진 일정, 예산과목, 계약방식 등)
  
3. 의뢰자 의견 및 기타
  
4. 관련법규
  
5. 첨부서류

※ 작성요령 — 집행부서

- 집행부서 : 일상감사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· 기관명을 기재한다.
- 건 명 : 일상감사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.
- 최종결재 : 시장, 부시장 전결, 국장 전결 등으로 기재한다.
- 의뢰일자 : 일상감사 요청 일자를 기재한다.
- 요청내역
  - 1) 요지 : 일상감사대상업무 요청내용을 요약 기재한다.
  - 2) 주요내용 : 감사요청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기재한다.
  - 3) 처리 의견 :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재한다.
  - 4) 관련 법규 : 일상감사대상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나 지침의 조항과 내용을 기재한다.
  - 5) 첨부서류 :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

## 오산시 일상감사 규정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일상감사결과 의견서

감사부서		접수일자	
건명		발송일자	

검토의견

---

#### ※ 작성요령 -감사부서

- 감사부서 : 일상감사대상업무 처리 부서 · 기관명을 기재한다.
- 건명 : 일상감사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.
- 접수일자 : 일상감사요청 문서접수부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.
- 발송일자 : 감사부서에서 집행부서에 발송하는 날자를 기재한다.
- 검토의견(의견란과 사유란) : 감사부서의 감사의견이 집행부서의 처리의견과 같을 때는 집행부서의 처리내용과 같다고 의견란에 기재하고 사유란은 생략한다.  
집행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의견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명시한 사유를 기재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

집행부서		시행일자	
건명			

1. 업무요지

2. 조치요구내용

3. 조치한 내용

4. 사유 및 관련법규

---

### ※ 작성요령 — 집행부서

- 건명 : 당해업무 제목을 기재한다.
- 업무요지 :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한다.
- 조치요구내용 : 감사부서에서 조치 요구한 내용을 기재한다.
- 조치한 내용 : 감사의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전부 또는 부분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반영 후 그에 따라 보완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사유 및 관련법규 : 조치한 내용에 대한 사유 및 관련법규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

오산시 일상감사 규정

[별지 제4호서식]

**일상감사 접수 및 회보대장**

접수 번호	접수일	의뢰 부서	건명	회보현황		감사의견 조치내용	감사자
				통보일	감사의견		